

부동산 공매공고 제7(공매참가조건) 바호의 일부 내용 수정

당 초 (제7조 바)	공매목적부동산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(연체료 포함)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.
변경 후 (제7조 바)	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, 전기료, 도시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제반 부담금(연체료 포함)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.

※ 공매목적부동산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“관리비, 전기료, 도시가스요금, 등” 일체의 제반 비용에 대하여 수탁자 겸 매도자 국제자산신탁(주)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합니다.